

■ 최신 판례 ■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이광선 변호사 | 신혜주 변호사

임원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A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B 씨는 회사 정관이 임원의 퇴직금을 '근속연수 2배수'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자, 이사회에서 만들어진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근거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자 A 회사는 현재 이사인 B 씨를 상대로 "B가 과거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금(및 상여금 등)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이라며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그 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퇴직금과 성격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운로드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